

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

(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)

1. 석유판매업

구분	석유판매업의 종류	취급 석유제품
등록 대상	일반대리점	○석유제품(용제·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)
	용제대리점	○용제
	주유소	○휘발유·등유·경유
	용제판매소	○용제
	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	○부산물인 석유제품
	부생연료유판매소	○부생연료유
신고 대상	일반판매소	○등유·경유
	항공유판매업	○항공유
	특수판매소	○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석유제품

※비고: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 판매업에서 제외한다.

2. 석유대체연료 판매업

구분	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	취급 석유대체연료
등록 대상	석유대체연료 대리점	○석유대체연료(바이오디젤, 바이오에탄올 또는 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)
	석유대체연료 주유소	○바이오디젤연료유(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), 바이오에탄올연료유(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), 석탄액화연료유, 가스액화연료유, 디메틸에테르연료유(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) ○휘발유·경유·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
	석유대체연료 판매소	○유화연료유 ○등유·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지식경제

		부령으로 정하는 연료
--	--	-------------